

중요재산 취득 승인안

의안 번호	136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8.11.12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1. 제안사유

- 지방자치법 제39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, 사하구 공유 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아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-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(08년 09월기준 30,989명)에 따라 노인의 여가문화와 건강증진 등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종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실정으로
- 부산시의 1구1노인복지관 확충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노인복지기반의 개선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대중교통 편의성과 접근성 등을 고려한 위치에 부지를 매입하여 노인복지관을 건립하고자함

3. 취득대상 재산현황

사업명	구분	소재지	면적(m ²)	구조	시설개요	소요예산(백만원)
사하구 노인복지관	토지	계	543		노유자 시설 ▷프로그램실, 식당 ▷상담실, 물리치료실 ▷강당, 자원봉사자실 ▷주간보호실 ▷작은도서관 체력단련실 등	3,042
		괴정동 284-1	444			
		괴정동 284-6	99			
	건물	계	1,650			
		괴정동 284-1	1,650	철근콘크리트		

4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36조,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
-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

취득대상 재산목록

회계명 : 일반회계

〈단위 : m², 백만원〉

구분	재산표시			예정가격	취득시기	취득사유
	지목 및 구조	소재지	면적			
토지	계		543	1,031	2008년 하반기 (매입)	사하구 노인 복지관건립
	대지	괴정동 284-1	444			
	대지	괴정동 284-6	99			
건물	계		1,650	2,011	2009년 하반기 (신축)	
	철근 콘크리트조	괴정동 284-1	1,650			
계				3,042		